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68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이종욱 · 박덕흠 · 주진우
이성권 · 김성원 · 나경원
김위상 · 송언석 · 엄태영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

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법률 제 호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위”를 “행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수석비서관”을 “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비위 행위) 이 법에서 사용 하는 “비위 행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u>행위</u> 4. · 5. (생 략)	제2조(비위 행위)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행위 또는 법령에 따라</u> <u>부여받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u> <u>행사에 부당하게 지시 · 간섭</u> <u>하는 행위</u> 4. · 5. (현행과 같음)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대통령비서실의 <u>수석비서관</u> 이상의 공무원	제5조(감찰대상자) ----- ----- ----- -----. 1. (현행과 같음) 2. ----- <u>비서관</u> ----- -----